

## 경기도 경관 조례

(제정) 2009-04-06 조례 제 387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경관관리의 기본방향)** 경관관리는 「경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·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

**제3조(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)** ①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안계획서(제안의 개요,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,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,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,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)

2. 경관현황 종합분석도(1/25,000)

3. 경관계획도(1/5,000)

4.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

5.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

2.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

3.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

4.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등

**제4조(경관계획의 내용)** 영 제3조제3호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.

1. 가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
2. 수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
4.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)**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경관사업의 대상)**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.

1.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
2.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

**제7조**(경관사업 사업계획서) 영 제8조제7호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비 산출근거
2. 사업비 조달방안
3.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
4. 사업계획 관련도서
5. 사업의 기대효과 등

**제8조**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은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원, 시민단체, 도시 및 경관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
③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업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**제9조**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)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
2.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

**제10조**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)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「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「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**제11조**(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경관위원회(이하 “경관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 한다.

② 경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.

1. 도의회 의원
2. 도 소속 또는 경관 및 도시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

3. 건축·도시·조경·토목·교통·생태환경·문화·농림·디자인·옥외광고·에너지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,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·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.

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)**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자문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 및 도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 등으로 한다.

②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.

**제13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영 제16조에 따라 경기도공동(경관, 도시계획, 건축 등을 말한다)위원회(이하 "공동위원회"라 한다)는 경관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과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

④ 공동위원회위원의 임기는 각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.

**제14조(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** ①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5조(회의운영)** ①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

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6조(수당 등)**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「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고, 관련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